

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신탁형)약관」 신구조문대비표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3 조(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	(신설)	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 3 조② 항을 적용할 때 다음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’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: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.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’란 매년 1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소득 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대통령령)제 93 조 10 에 따른 특례적용 2024.04.01 신설
	(신설)	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5 항제 2 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11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가. 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.)보다 작은 경우	소득세법시행령 제 189 조의 2③ 2025.07.01 시행에 따른 변경

		「소득세법」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나. 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원천징수세율 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 다.)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- 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. 제 1 호를 적용할 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18 제 1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,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 분의 14 로 하여 계산한다.	
제 29 조(관할법 원)	①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	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· 무선 · 화상통신 ·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 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다만,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 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	공정위 시정조치 사항

	바에 따른다.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	
--	--	--	--